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4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4년 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우리시 조례 내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2.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3.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4. 일본어 투 표현 “요하는” 등 정비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가 필요하거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 명칭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됨.

2.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용어 정비를 시행하였음.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일본어 투 표현인 ‘요하는’ 등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 872개¹⁾ 중 84개를 대상으로 110건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제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조례 872건, 규칙 233건, 훈령 34건, 예규 13건이 등록되어 있음.(2024.8.6.기준)

명 등 현행화 조문 23건(조례 14개)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조문 28건(조례 24개), 일본어 투 표현 ‘요하는’ 등에 해당하는 용어 순화 조문 56건(조례 51개),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조문 3건 등임(조례 3개) [참고자료 1].

< 조례안 정비 세부내용 >

구 분	유형별 정비내용 사례
인용조문, 제명 현행화 (2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2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담당관 ⇒ 정보시스템과장 ◦ 시민협력과장 ⇒ 평가담당관 ◦ 남북협력과장 ⇒ 평화기반조성과장
일본식 용어 순화 (5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하는 ⇒ ~이 필요한 ◦ 요하지 아니하다 ⇒ ~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 외(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오기 정정

-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현행화로 법적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다만 “요하다” 와 같은 일본식 용어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정비 시기가 상당 시간 지연되었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이러한 일본식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관련하여 이번 일괄

정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된 조례들이 일부 존재하므로, 향후 서울시는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용어들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²⁾

담당자	연락처
김수은 입법조사관	02-2180-8064

2) 일례로, 지난 2023년 6월 27일 기존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음.

[참고자료1]

<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

조항 번호	정비대상 조례명	해당 조례 조항	현행	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라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사용 공공사용	공공사용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정보시스템과장
제4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10조제1항	정보공개담당관	정보시스템과장
제5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장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	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
제5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리·운영의 관리대행	관리·운영의 대행
제5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수탁기관을	관리대행업자를
제6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10조제3항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조사
제6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
제6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7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재정 투·융자 심사	투자심사
제9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시민협력과장	평가담당관
제11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남북협력과장	평화기반조성과장
제1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교통정보과	미래첨단교통과
제13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3	을 요하는	이 필요한

제14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15조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제2호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제16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17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제2항	요양을 요하는	요양이 필요한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2조제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제19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을 요하는	이 필요한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경우
제21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22조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제23조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7조제1항 제3호	분해를 요하는	분해가 필요한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별지6호서식	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사업소장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21조의2제4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2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제1호	정리를 요하는	정리가 필요한
제2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6조의2 제3항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관
제27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 제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제28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이거나
제29조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마목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30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제5호다목	보온을 요하는	보온이 필요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보온을 요하는	보온이 필요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보온을 요하는	보온이 필요한
제31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안전총괄관	도로기획관
제32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호	정리를 요하는	정리가 필요한
제32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호	정리를 요하는	정리가 필요한
제33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34조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35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제4항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제36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제37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제8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37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38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7조제2항	요양을 요하는	요양이 필요한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제1항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제40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5조제1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42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제43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제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제44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45조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제46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제47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제1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48조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2조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49조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회복을 요하는	회복이 필요한
제50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5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기술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한
제52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호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제5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7조제1항 제4호	설치를 요하지	설치가 필요하지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허가를 요하지	허가가 필요하지
제5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제55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이거나
제55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의1 제2항제2호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이거나
제56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
제57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제58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제58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59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제60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의8제4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이거나
제61조	서울특별시 청령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6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제61조	서울특별시 청령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감사담당관	청령담당관
제62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제63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0조제3항	긴급을 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제64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8조제2항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제65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별표 주관국(과)란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 호담당관)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 당관)
제6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67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8조제1항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68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제2호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69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
제70조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71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실장
제72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과장
제7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의3제3항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정책과장
제7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호가목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정책과장
제7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호다목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과장
제7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1호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정책과장
제74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3호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과장
제75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13조제5항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과장
제76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다목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제77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빅데이터담당관	데이터전략과장
제78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제1 호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제79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제79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0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
제81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
제82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9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3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3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6조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제83조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8조	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제84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
제85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